

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적용시한(1991. 12. 31) 만료에 따른 시한연장임
-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촉진

4. 주요골자

-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태양열난방 주택의 건축시 취득세, 등록세, 면제

5. 검토의견

- 주거용 건축물 중 난방을 요하는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집열판을 지붕위에 설치하고 그 집열판을 통해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 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촉진을 위하여는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 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<p>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.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에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(“없습니다”하는 위원 있음)</p> <p>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?</p> <p>(“없습니다”하는 위원 있음)</p>	<p>한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,</p> <p>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한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?</p> <p>(“없습니다”하는 위원 있음)</p> <p>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/p>
<p>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개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,</p> <p>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한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,</p> <p>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한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,</p> <p>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한 한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,</p> <p>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한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,</p> <p>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중고차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</p>	<p>18.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한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충청북도지사제출)</p> <p>19. 충청북도 철도건설공유지분 활용기애 따른 등록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(충청북도지사제출)</p> <p>(14시 20분)</p> <p>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한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,</p> <p>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철도건설공유지분 활용기애 따른 등록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.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</p>